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22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합명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2. 6.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0. 접수 제348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1. 접수 제245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7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소861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5. ‘C은 원고에게 15,6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원고는 2022.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소2725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C, E가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2. 6.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C, E는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20. 2.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1.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1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C은 2019. 12.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느단111호), 위 법원은 2020. 1. 2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이 2019. 12. 1. 사망한 후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가 모두 가지고 C은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C의 2/7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C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이미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C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C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안동시 F에 있는 G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H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제4층 84.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안동시 F 대 3316㎡
[대지권의 비율]
54분의 1
 2. 경북 의성군 I 전 841㎡
 3. J 전 1574㎡
 4. K 전 612㎡
 5. L 전 668㎡
 6. M 전 666㎡
 7. N 답 1570㎡
- 끝.

1) 원고는 청구취지에 D의 사망일인 “2019. 12. 1.”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2020. 2. 6.”로 정정한다.